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 불어과 교수

1. 머리말

우선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프랑스 지식인이 프랑스어를 옹호하기 위해 르몽드지(Le Monde 1983.4.17.)에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해 보자.

“프랑스어는 전통적으로 문화의 언어이자 국제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최근 몇 십 년 간 프랑스어가 점차 약화되고 불분명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위가 추락되었다. 어휘의 풍부함이 극도로 줄어들었고, 문법과 구문의 복잡성과 정교함 역시 대부분 상실되었다. 필요하기는 하나 고유한 특수 분야를 넘어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래서 상호 이해가 결여되는 전문어휘가 무한정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널리 쓰이는 구어 프랑스어가 프랑스어의 기본형으로 간소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우리 언어의 심장을 위협하는 타락과 빈곤의 과정이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가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이 때 프랑스인은 이러한 자신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산인 자신의 언어에 그 가치를 시급히 복귀시켜 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언어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론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이 자기 문화 유산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학과 언어라고 대답하고, 지난 30년 간에 프랑스어가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들과 지식인들의 자기 언어인 프랑스에 대한 양식과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언어 의식과 자부심은 현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 프랑스어 언어정책과 법제는 정부와 정치 생활, 경제와 고용 정책, 고도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제반 양식에 근거를 둔 정책들과 관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생겨난 언어적 관습이 구체적 언어에 관한 법규로 항상 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언어 정책 절차들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사회적 조처들은 언어 규범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언어 정책의 성립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법적 장치와 그 시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언어정책은 이 정책을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역사성이 있고, 언어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언어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데올로기가 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과 법이라도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언어도 법, 종교, 도덕처럼 하나의 제도이며, 뒤르켐이 정의한 것처럼 강제성이 있지만 그것은 법과 같은 정도의 강제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사회가 언어에 대해 지닌 가치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원들, 특히 사회의 상층 계층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집단적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갈고 닦은 덕택에 이러한 언어에 대한 양식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지위를 방어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2. 언어정책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배경

프랑스 언어정책과 그 법제의 근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언어의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언어의식의 생겨난 것은 프랑스어의 기원과 발달과정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라틴어 문화권 내에서 민중어의 열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한 방언권의 지역어가 유럽의 문화의 지주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 사회문화적인 준거가 있었다. 첫째는 프랑스어가 표준어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체(레지스터)가 가지게 된 위세이고, 둘째는 이 위세를 지닌 언어에 대한 이데올로기, 즉 ‘올바른 용법’의 정립이며, 셋째는 이 특정 언어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작업을 통한 체계화와 규범화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명화의 과정을 겪은 언어의 ‘이상형’을 바탕으로 그것을 지키려는 정책과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2.1. 표준어의 성립

기원 전 1세기에 갈리아 지방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프랑스어는 이 지방에 들어온 로마 행정가, 군인, 상인, 이주민들이 사용하던 구어 라틴어로부터 발달한 언어이다. 그 후 5, 6세기에 이 지역에 침입한 프랑크족의 왕들과 그 이후 근세의 대혁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후예들은 북부 프랑스 지역에 그 터전을 형성하였고, 특히 파리가 중심인 일르 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영토를 점차 확장하였다. 최초의 프랑스로 씌어진 텍스트는 스트라스부르 서약(843년)이다. 초기만 해도 프랑키아어는 다른 방언들에 비해 그리 우세하지 못했고, 다른 지방의 방언들이 우세했다. 그러나 위그 카페 왕조(987-1328년)가 이 곳에 왕국을 세우면서 이 지방의 방언인 프랑키아어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3세기를 지나면서 타 방언으로 쓰인 문헌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프랑키아어로 쓰인 문헌들이 점차 많이 출현하게 된다. 타 지역의 작가들도 점차 이 방언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부터 이 방언은 표준어가 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은 프랑스 왕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기초해서, 일르 드 프랑스의 정치(왕궁이 위치), 종교(대수도원이 위치), 지리(북부 지방의 요충지), 경제(활발한 경제 중심지), 문화(많은 문헌들의 산출) 여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궁정과 귀족 그리고 식자층이 사회계층적 우위를 점유하고, 민중들과 지방들을 지배함으로써 소수의 권력층의 언어가 가장 탁월한 사회적 위세를 지닌 언어로 간주되었고, 이들의 언어 관용이 언어 모델로 정착했고, 문헌으로 많이 기록되었다. 그 후 중세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어는 서서히 발달하여 근대 프랑스어로서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프랑스어는 사회생활의 각 영역으로 침투되는데, 최초의 공식적 법령이 프랑수와 1세의 빌레르 코트레 칙령(1539년) 제111조이다. 이 칙령은 원래 사법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인 모든 공문서는 오직 프랑스어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또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와 진행을 프랑스어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후 10년이 못되어 종교와 행정, 법률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프랑스어가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프랑스어가 별로 사용되지 아니한 주변 지역에서도 이 칙령대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문어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배 계층들과 행정가들, 법률가들 그리고 상인들은 그 이후 프랑스어를 사용하였고,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훌륭한 프랑스어 구사력으로 권력과 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대중 집단은 기본적으로 구어 전승에 입각한 지역어와 방언만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력과 영향력이 없었다.

2.2. 올바른 용법과 규범의 성립

17세기에 프랑스어의 ‘올바른 용법’(bon usage)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것이 규범으로 정착했다. 언어의 올바른 용법 바로 궁정의 프랑스어였다. 프랑스 언어정책의 기본 틀은 이 규범적인 프랑스어의 정립과 방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설정 없이는 언어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프랑스어의 규범화 과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용법의 성립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16세기에 많은 문법서들이 작성되는데, 그 가운데 메그레의 『프랑스어 문법론』(1550년)은 이미 모든 언어체가 모두 추천할 만한 좋은 것은 아니라 하고, 올바른 용법과 틀린 용법이 있음을 구별하였다. 17세기에 와서 프랑스 왕들은 파리와 베르사유의 궁정을 통하여 귀족과 부르주아지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프랑스어는 궁정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문법가들에 의해 규범화되고, 체계화되고, 통제되었다. 말레르브(1555-1628년)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과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항구의 하역부들이나 시장의 짐꾼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어순화주의를 주장했다. 데포르트(1546-1606년)는 방언, 전문용어, 고어, 이탈리아어 등을 제거하고, 언어가 명시적 통사법을 이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명확한 애매성이 없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명료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규범화할 것을 말했다. 또한 보줄라(1585-1650년)는 그 당시의 작가들의 가장 건전한 집단의 글쓰는 방식과 일치되면서 궁정의 교양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올바른 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언어관은 그 당시 부상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와 계층의 언어관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포르 루와얄(Port-Royal)의 장세니스트들은 언어를 이성과 논리에 근거하여 연구했으며(일반이성문법, 1660년), 그 후 이러한 이성주의 문법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18세기의 로몽의 『프랑스어 문법요체』(1780년)는 유명 작가들의 언어모델에 준거해서 규범화를 시도하고, 프랑스어에 내재하는 논리, 이성, 엄밀성에 호소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용법에 대한 백과사전식의 기술을 하였다. 언어의 규범화 작업과 더불어 1635년에 왕의 행정고문이었던 리슐리외에 의해 국가적인 목표를 지닌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되어, 언어사용의 가장 올바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논란을 결정하는 기관이 되었다. 비록 언어문제에 있어서 법규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왕권의 지배력은 여전히 분명하게 행사되고 있었다. 그리하

여 아카데미는 문법과 사전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수사학과 시학을 작성하여, 행정과 과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적인 제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언어의 규범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2.3. 규범과 언어정책

올바른 용법은 일정하게 한정된 사회 계층의 언어였고, 사전편찬가, 문법가들은 자신의 언어의식과 언어지식에 입각해서 관용의 일반적 규칙을 세우고, 문인들에게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그 임무를 맡겼다. 대혁명기에 긍정이 몰락하고, 올바른 프랑스어의 준거가 사라지자 유명 작가의 언어관용이 입법가들에 의해 권위로 이용되어, 올바른 프랑스어의 전범, 즉 규범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까지 규범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용어의 생성,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외국어, 특히 영어의 이입과 언어적 다원주의, 그리고 언어관용 상에 드러난 변화, 사회계층의 이동과 변동 등으로 규범의 준거와 규범화의 문서들이 문체시되자 과거의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언어규범이 더욱 절실했다. 그리고 이 규범을 어느 한 계층에 일임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이들이 올바른 언어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 사회 계층에 국한된, 문화적 엘리트가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더 이상 처방적 규범(그 사용을 강제하고 따르게 한다는 의미에서)이 될 수 없고, 대부분의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받아들여 사용하는 관용적 규범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올바른 용법의 개념은 오늘날 정확히 과학하기가 불가능해졌다(라루스 현대 프랑스어문법, 서문, 5쪽) 그리하여 규범화를 위한 조처들이 언어현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새로운 언어정책과 법제가 다시 탄생되었다. 규범(처방적)의 실천자, 사용자가 없으면 규범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사문화되며, 규범의 위

반이 확대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언어 관용이 되어 새로운 규범(관용적)이 된다.

이처럼 언어의 규범이 존재하려면 규범의 제도화를 위한 인물, 조직, 소수의 지도적 집단이 필요하고, 이를 언어 사회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반 수단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제반 조치들이 바로 언어정책의 기반이 된다. 프랑스어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집단적인 노력이 결집되어 산출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는 이 언어를 자아와 집단의식과 동일시하는 인물들과 단체가 있어서 이들이 규범을 확립하고, 언어 문제에 규범적 조치를 취하고, 이 규범을 형성,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규범의 발달과 언어정책의 발달이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언어정책과 언어입법의 전통

국가가 언어 문제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한 주요 입법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몇몇 기록할만한 사건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직접적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언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적이라 함은 국가권력이 위임된 국가의 기관에 의해 언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3.1. 빌레르 코트레 칙령(1539년)

이 칙령은 모든 사법, 행정 절차를 오직 모국어인 프랑스어로만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이 칙령이 공포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그 시행 결과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왕국이 통일된 기반 위에서 국내외적으로 왕권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외적으로는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국내적으로는 종교전쟁으로 불안정한 사회기반이 왕권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시기였다. 특히 행정의 조직화, 조세제도를 통한 재정의 강화, 사법권의 확립으로 왕국이 조직

되어 가는 시기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문주의 정신과 인쇄술의 발달로 학문 연구가 쇠퇴하고, 지적 생활이 꽃피기 시작했고, 장원경제의 몰락과 도시의 발흥, 사회계층의 신분이동에 따른 부르주아 계급의 성립 등 사회경제적 변동이 큰 시기였다. 또 복잡한 법률체계(로마법, 국가 성문법, 관습법, 교회법 등)로 인해 법률가들이 득세하는 시기인 동시에 이 법률을 성문화, 체계화(codification)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언어적으로는 중기 프랑스에서 근대 프랑스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모국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국민적 자의식의 발로로서 프랑스어가 라틴어를 대신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언어에 대한 규범화, 체계화(codification)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시기에 와서 특히 법과 행정 관련 문헌들이 프랑스어로 광범위하게 기록되면서, 라틴어와 지방어로 기록된 문헌들이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각 지방에 고유한 관습에 따른 관습법들이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성문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과 관련된 사법 영역에서 유언, 공증문서, 영수증, 공적 서신 등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예컨대 샤를르 8세는 언어 문제를 입법화한 최초의 왕이다. 남부 오크어 지역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프랑스어나 모국어”로 작성할 것을 명하였다(1490년). 또 1510년에 루이 12세는 모든 범죄 소송과 조서들을 “해당 지방의 지방어와 대중어”로 작성할 것을 명하였고, 프랑수아 1세는 1539년에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공포하기에 앞서 1535년에 이쉬르틸르 칙령을 통해 범죄 소송과 심문이 “프랑스어나 최소한 해당 지방어로” 작성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1539년에는 최초의 언어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 110조는 법조항의 이해에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어떤 중의성, 불확실성,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11조에서 전체 소송 절차가 “오직 모국어 프랑스어로만, 따라서 그 외의 어떤 언어로써”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 칙령이 공포된 지 10년이 지나서 프랑스의 그 어느 지방에서도 법률 문헌에서 지방어가 출현하지 않았고, 16세기 말경에는 모든 지방의 관습법, 개인 사법조차 모두 프랑스어로만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법적, 행정적 문서들이 점차 성문화, 체계화되면서 언어의 이해가능성, 정확성과 명료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문헌이 국가어인 프랑스어로 작성, 성문화된 것이다. 이 시기만 해도 문헌의 20% 정도가 프랑스어로 쓰였고, 북부 오일어권에서는 여전히 방언들이 일상 구어로 광범하게 사용되었고, 남부 오크어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어의 사용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족과 부르주아지, 지식 엘리트와 중급 지도계급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언어 입법화가 대중들의 언어생활을 규제하는 단계는 아직 요원했으며, 대혁명(1789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3.2. 아카데미 프랑세즈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635년 루이 13세의 섭정 최고대신인 리슐리외에 의해 창설되었고, 1637년에 법적 기관으로 인준을 받는다. 이 기관은 리슐리외가 프랑스어와 문학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 휘하에 두었다. 따라서 아카데미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빌레르 코트레 칙령 이후 최초로 언어 문제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사건이 된다. 이 시기는 절대 왕정과 권위주의 그리고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에 의해 사회 질서 및 정신사가 인도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프랑스어는 모든 지적 활동(저술 및 교육)의 기본 수단이 되었고, 그 프랑스어의 규범화 작업도 거의 정점에 와 있었다. 또 한편 이 시기는 언어 순수주의와 올바른 용법이 정립된 시기로서 이러한 언어규범이 권력자들과 문법가, 작가의 영향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물론 법적 구속력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준수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예컨대 말레르브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수 언어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여 언어규칙을 작성하고, 프랑스어로

부터 기술, 과학, 법적인 용어와 방언, 고어, 외국어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보줄라는 궁정의 관용이 그 어떤 관용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궁정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관용이 올바른 용법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아카데미의 필요성과 역할이 정의되고 있다.

아카데미의 이상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며, 이 완성의 경지는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언어를 갈고 닦아서 이를 규범적 규칙들로 환원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카데미의 기능은 최선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 언어에 확실한 규칙들을 부여하고, 이로써 언어를 순수하고 웅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모든 예술과 학문을 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아카데미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작업을 수행했다. 첫째, 프랑스어에 적절한 규칙을 부여하는 법적인 언어각서, 둘째, 작가들이 사용한 언어에 대한 재판권, 셋째, 규범적 문법, 사전, 수사학, 시학의 작성이다. 루이 14세 시기의 1674년에는 아카데미에 독점적 사전 편찬권을 부여하였고, 다른 어떤 자도 프랑스어 사전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예컨대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뷔르티에르조차 자신의 사전을 편찬해 내려다가 아카데미에서 추방당했으며, 그의 『보편사전』은 1690년 네델란드에서 출간되었다. 『아카데미 사전』은 169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사전에 용인된 어휘, 의미, 정서법 외에도 발음, 문법기능, 통사규칙, 문체적 가능성, 화계 등에 대한 많은 지시사항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언어규범들, 특히 문법서는 아직까지도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언어문제에 대한 아카데미의 결정은 일반적인 규칙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사안별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예컨대 *fourbu*가 옳으냐 *forbu*가 옳으냐는 식이다.

아카데미는 대혁명기(1793년)에 해체되었다가 1816년에 원래 형태로 복원되었다. 오늘날 아카데미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으나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프랑스어의 현양을 위해 수많은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각종 문학협회, 문학지, 공식, 비공식의 언어단체를 지원, 협력한

다. 예컨대 1983년 1월 시청각과 광고용어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 사용법은 “현 법률 부록1의 표현과 용어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의견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1986년에는 아카데미의 상근 이사를 프랑수아 총괄실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케 하고, 교육성에의 언어문제에 대한 자문을 한다.

3.3. 대혁명기의 정책과 학교

대혁명(1789년)은 프랑스어의 전국적 확산과 대중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대혁명의 이념에서 비롯된다. 그 정책은 ‘언어 통일은 대혁명의 총체적인 한 부분이다’라는 이념 아래서 언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세부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언어 입법이 가장 중요한 언어정책이다.

우선 혁명가들은 프랑스의 언어적 다양성, 즉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함으로써 자신들의 혁명 이상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1790년에 그레구아르 사제에게 프랑스의 언어상황을 조사시켰다. 그레구아르는 모든 교구의 사제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자기 교구에서 방언이 사용되는지와 프랑스어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그는 『지역어를 추방하고 프랑스어 사용을 보편화해야 할 필요성과 방도』(1794년)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으며(특히 남부), 단 300만 명의 인구가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었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더욱 적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편견을 타파하고, 모든 진리와 재능을 개발하고, 모든 시민을 국가조직으로 결집시키고, 정치조직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어를 모든 국민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원리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혁명 정부는 1794년 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법령을 공포했다.

제1조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공화국 영토의 어디에서건 모든 공문서는 프랑스어만을 사용한다.

제3조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직무수행 중에 조서, 판결문, 계약서와 다른 일반 문서를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그런 문건을 서명 승인하는 모든 공무원은 거주지의 경범죄관소로 회부되어 6 개월의 금고형에 처하고 파면한다.

이와 함께 1791년 탈레랑은 헌법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 코뮌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고, 모든 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지고, 또한 프랑스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초등과정을 위해서는 사범학교(écoles normales)가, 중등과정을 위해서는 고등 사범학교(écoles normales supérieures)가 설립되었다(여기서 normale은 규범적이란 의미이다). 그 결과 1832년에 초등학교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각 코뮌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국비로 급여를 받는 교사를 채용토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글씨를 프랑스어로 실시하였으며, 국가 시험에 표준 철자법과 표준문법이 사용되었다. 노엘과 샵살의 『문법의 문법』(1811년)과 『아카데미 사전』의 철자법이 표준(규범)으로 채택되었다. 혁명 정부는 국가 행정조직을 시골까지 확대하고 행정, 법률 등 공문서에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들은 이 규칙을 준수하였고,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일례를 들면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녀는 프랑스어를 쓰고, 입을 줄 알아야 한다든가, 교장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하는지를 감시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어를 사용하면 체벌하든가 창피를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 시기의 언어정책은 국가가 법의 권력과 공공 학교제도를 통해 프랑스어를 삶의 모든 영역에 사용할 것을 강제했고, 국가교육을 통한 언어 입법이 강력히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현대의 언어정책과 법제

최근의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대내적으로는 일상 생활과 전문영역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의 범람에 프랑스어를 방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어권과의 언어문화 결속을 다지면서 세계 내에서 위축되어 가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지위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볼 수 없는 직접적인 언어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언어정책

현대의 프랑스 정부의 언어 정책의 근간은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어입법(소위 바로리올법: 이 법안 제안자와 국회에서의 해설자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이다)과 관련된다. 이 언어정책의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를 통해 프랑스어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
- 2)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들 간의 만족할만한 관계를 수립할 것.
- 3) 유럽 내에서 프랑스어의 지위를 적극 방어할 것.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이 추구하는 세부적 지시사항들은 모두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프랑스어 최고 심의위원회(HCLF)의 위원장이었던 파랑지스는 1983년 최고 심의위원회에서 작성, 배포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11가지 언어정책을 발표했다.

- 1) 프랑스어의 생명력을 고취시킬 것
- 2) 프랑스어의 풍요성을 아낄 것
- 3) 프랑스어의 교육을 향상시킬 것

- 4) 프랑스어 정책과 일반 언어정책을 통신공학의 새로운 기술의 정복으로 조화시킬 것
- 5) 프랑스어의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개발할 것
- 6) 프랑스어 언어법규를 개정할 것
- 7) 행정어와 법률어의 품질, 현대성, 접근용이성을 확보할 것
- 8) 프랑스어를 상업어로 발전시킬 것
- 9) 프랑스어 정책을 일반 문화정책과 연관지을 것
- 10) 프랑스어를 해외에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데 지원할 것
- 11) 활발한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축할 것

4.2. 언어입법

공식적으로 현대의 프랑스 언어법규는 두 가지 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5년 12월 31일의 바로리올법(1977, 1982에 개정)과 1994년 8월 4일의 언어법규(소위 투봉법 : 프랑스어문화권 장관인 투봉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와 그 시행지침들이다(이 법의 전문은 송기형, 정철현(1999)와 김진수(2001)에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골자만 제시한다).

1975년의 언어법규는 세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즉 상업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용어를 규정하고, 교육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리올법(75-1349)는 상업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통제하는 기본 조문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다.

- 제1조 : 상품명, 소개, 광고, 사용 안내, 상품과 용역의 보증 조건, 신청장, 청구서 및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다. 외국어나 외국 용어의 사용은 금지한다.
- 제4조 : 프랑스 영토 내에서 유효한 고용계약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의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8조 : 그 목적이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계약, 개인 간의 계약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프랑스 공공기관과 외국의 공적, 사적 계약 단체와 맺은 계약은 외국어가 병기될 수 있고, 이는 프랑스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항들은 위원회에서 논란을 거쳐 대폭 수정된 것이지만, 1973년에 입안되어 1975년 12월 31일에 통과할 때까지 거의 3년이 걸렸다. 이 법은 1977년 한 차례 개정되었고, 1982년 EC위원회가 프랑스 수상으로 하여금 유럽 국가의 관계 법규와 관련하여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변경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법을 재정비하여 강화하자는 데에 대해 1982년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 1984년에 법안으로 성안되었으나 언론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이 바로리올법의 시행은 소비자보호 정무장관 산하의 소비 및 규제방지 총괄국과 재정예산부 산하의 소비 및 공정거래 총괄국, 관세청에 달려 있다. 그것은 이 언어법의 위반사례를 이곳에서 감시, 적발하고, 고발하기 때문이다. 소비 및 공정거래 총괄국의 직무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부서는 1983년에 174개 위반 건을 고발하고, 373,711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법의 이행 태만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총연맹의 모델에 따라 프랑스어 사용자 총협회(AGULF)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공통의 언어 문화유산을 방어하고, 그 선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 언어법의 위반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그 사례를 보면, 1981년에 유럽 사진사를 그 제품의 사용지침과, 보증서가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300 프랑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 1983년에 국립 파리 오페라단/엠지엠 콘체르트가 주관한 Bubbling Brown Sugar Show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60프랑의 벌금을 물리고, 사용자 총연맹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서 1300 프랑의 손해 배상 비용을 물게 했다.

1975년의 법규 외에도 1966년 프랑스어 최고 심의위원회가 창설된 후 전문용어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결정된 규정들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신어관보(官報)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이 결정된 용어들은 모든 공문과 국가와 계약을 맺는 모든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1984년 1월 24일의 시청각 매체, 광고의 용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록에서 영어 용어에 대한 프랑스어 용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부록 1>

maquette, n.f.

사용영역 : 광고

정의 : (생략)

영어: advanced lay-out

<부록 2>

금지 용어 색인

영어(금지 용어) 프랑스어(추천 용어)

advanced lay-out maquette

1994년의 투봉법은 여론조사와 반대 의원들의 헌법소원을 겪는 등의 난산 끝에 제정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투봉법에서는 프랑스어가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며,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권적 연결요소라는 것을 제1조에 확인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비자 관련 정보, 노동, 교육, 방송, 행사, 학회, 공공업무의 각 영역에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소비자 관련 정보(제2, 3, 4조)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기술, 방송 광고에서 프랑스

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노동 관련법에서는 노동계약과 구인광고, 내규, 단체협약, 노동자의 의무, 노동수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 등을 역시 프랑스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언어 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제5, 8, 9, 10조).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규정한다(제11조). 또 통신, 방송의 영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 프랑스인(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학회, 회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자료, 업무 자료, 회의록, 보고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프랑스어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제6조). 마지막으로 공공업무의 영역에서 공법 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을 프랑스어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역시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위반 시에 적용되는 시형제책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이 법을 어기면 지원금 전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제15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이 이 규정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으며, 서류 열람, 복사, 제품의 선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16조). 그리고 법령으로 그 조건을 인가 받은 정규 협회는 위반 관련 소송에서 손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예컨대 프랑스어 수호협회나 프랑스어 정보처리전문가 협회 등이다.

이러한 언어입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12일자로 발표된 국무총리 회장(circulaire)은 법시행의 핵심적 주체인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법령, 명령의 엄격한 시행을 확보하고, 법시행은 책임진 공무원은 범위만을 단호히 적발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승인된 용어를 보급하는 일이나 정부의 홍보부서나 출판물은 프랑스어 사용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교육을 통해 이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외국기관이나 국제관계에서도 이 프랑스어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발표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정부 각 부처의 지침을 작성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시행을 위한 회장은 이 법시행 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교육에서 교육부는 언어교육에 대한 지침서(Programme)를 발간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교재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교과들이 준수해야 하는 강의안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학관을 통해 각 개별 교과서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역시 이러한 언어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 한편 교육부는 1901년과 1976년에 시험에서 정오답을 가려내는 언어적 사항을 실은 허용지침서(Tolerances)를 발간했다. 1976년의 허용지침서에는 시험에서 오답으로 처리되지 않은 33가지 사항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의 일치 문제에서 *une bande de moineaux, un de ces homme* 뒤에 동사를 단수와 복수를 모두 허용하고 있고, 또 *c'est de beaux resultats*와 *ce sont de beaux resultats* 두 제시표현을 모두 허용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언어통제는 특히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졸업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5. 정부의 공식적 언어단체와 민간 언어단체

정부의 공식적 언어단체와 조직,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공식적 단체들 그리고 언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지지단체들은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주요한 부분이자 자국어 방어를 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와 민간인들의 의지의 표명이다. 우선 공식적인 정부 단체를 보자.

5.1. 프랑스어 최고 심의위원회(HCLF)

1966년에 창설되어 수상 직속으로 있으며, 수상의 관장한다. 풍피두가 수상으로 재직할 당시 이 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러 분들의 연구와 제안은 두 영역과 관련됩니다. 즉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통일성, 그리고 프랑스어의 보급입니다.” 이 최고 심의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언어를 통제하는 단체들의 창설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7년부터 행정에서 올바른 프랑스어 사용을 위한 협회의 창설도 주도했다. 이해에 또한 프랑스어 국제자문위원회(CILF)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972년에 이 최고 심의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전문용어를 위한 장관급 위원회를 창설케 했고, 1973년부터 전문용어 관련 법령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된 1975년 12월 31일의 바로리올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84년에는 프랑스어의 보급과 보호를 위한 공식적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결정들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된다.

5.2. 프랑스어권 최고 자문위원회(HCF)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며 프랑스 국내외 최고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 위원회는 세계 내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어권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명세화하고, 행동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5.3. 프랑스어 자문위원회(CCLF)

1984년 2월 9일 시행령에 명시된 바대로 이 위원회는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큰 방향의 테두리 내에서 프랑스어의 용법과 보급, 프랑스어권, 프랑스어의 언어들과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9~25인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수상

이 주관하거나 그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이 위원회는 언어 문제에 대한 실무적 분과로서 수상에게 언어문제에 대한 조치, 태도를 권고한다. 예컨대 1986년의 회장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새로운 직종의 발생으로 인한 직업, 직책, 직급, 직위의 명칭의 여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5.4. 프랑스어 총괄위원회(CGLF)

프랑스어의 보급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갖는다. 위와 유사한 기구이나 모든 공적, 사적 단체들이 프랑스어 방어에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프랑스어 단체들의 결정을 조정한다. 그리고 학교 이외의 다른 방도를 통해 프랑스어를 보급하려는 노력들을 중재하고, 프랑스어 사용을 증진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 실행 단체의 수장 자리에 언어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총무가 있다. 특히 전문용어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공표한다. 『프랑스어의 미래』(1986년), 『프랑스어 경제용어』(1987년), 『공용 신어사전』(1988년)를 출간했다.

5.5. 프랑스어 총괄실(DGLF)

프랑스어 총괄위원회가 1986년 6월에 총괄실로 개칭되었다. 이전 기관과의 목적이 유사하나 목표가 더욱 구체적이다. 언어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한편, 법을 위반한 기관에 경고를 내리며, 위법사항에 대해 적발권을 지닌 소비 및 공정거래국과 긴밀히 협조한다. 그리고 프랑스어의 방어라는 일반적 개념을 프랑스어의 올바른 용법의 방어라는 더 구체화된 목표를 위해 업무를 관리한다. 그리고 전 기관보다 위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

5.6. 프랑스어 고위 자문위원회(CSLF)

프랑스어 자문위원회가 바뀐 기구이다. 이전 기관과의 목적이 유사하다.

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장려가 포함된다. 수상을 포함하여 교육성 장관과 프랑스어권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상근이사, 과학 아카데미 상근이사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규범주의로 회귀하며, 언어지침의 구현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7. 각 행정부서의 전문용어위원회(CMT)

현재 프랑스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가 전문용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혁혁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1970년 1월 법령은 각 부처의 전문용어위원회의 필요성을 확정하고, 1972년에 프랑스어 용어의 풍요성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즉 각 행정부처 장관은 승인된 전문용어와 표현의 목록이 법규 형식으로 관보에 공표되었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전문용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년에 모든 행정부처가 각기 고유한 전문용어위원회를 가져야 한다는 일반 규정을 제정하여, 2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40개의 하위 분과가 생겨났다. 1990년이래 캐나다 대사관 대표, 퀘벡 대표, 스위스, 벨기에, 문화협력기술위원회 대표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각국의 해당 부처와 전문용어위원회에 보고한다.

1970-1988년 사이에 이 위원회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29개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전문용어를 제정하였고, 이를 『신어관보』(Journal officiel de néologismes)에 공표한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묶어서 출간하는데 총괄위원회는 『공용 신어사전』(1991. 3)을, 프랑스어 총괄 대표부는 『공용 용어사전』을 발간했다. 1971년 이후 중앙행정부서에 설립된 전문용어위원회와 아카데미가 만든 문서들에 근간해서 정부는 1973년 1월 18일에 최초로 『신어관보』에 행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장관 조례에 의해 추천되거나 의무적인 용법으로 규정된 표현들과 용어들의 목록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승인되지 않은 영어와 신어를 추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에 발표된 최초의 목록들에는 시청각 용어, 건축도로 용

어, 도시계획 용어, 핵기술 용어, 석유산업 용어, 항공, 운수산업 용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최초의 규정들에 이어 경제와 회계(1973년), 건강과 의학(1975, 1978년), 국방(1976년), 사법(1977년), 우주항공 개발(1980, 1982년), 컴퓨터공학(1981, 1983년), 관광(1982년), 통신(1982년)에 관련된 용어들의 목록 역시 발표되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다른 전문용어들은 해양, 운동, 환경, 삶의 질, 여성활동 등과 관련된 분야들이다. 이러한 의무화의 한 예로 1987년의 전문용어 법령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관련한 전문용어를 간단히 2개어 불영 목록사전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등재된 목록사항을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정부의 공식적 문서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6개월 이내에 모든 민원 관련 문서, 조달계약서, 교육, 연구 문헌, 국가지원 기관의 문헌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프랑스 외무성은 1985년 세계 각국의 명칭과 수도의 공식철자법 목록을 발표하고, 예컨대 중국 지명의 경우에는 2가지 표기법의 가능성(프랑스어 관행에 따른 철자법과 중국의 당국의 공식철자법 Pin Yin 전사법에 의한 철자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용어는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련 법령은 해당 부처와 교육성이 주도하고, 법령의 범위를 정하며, 언어정책으로서 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어 일반 어휘 내에 들어오는 외국의 전문 어휘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결국 프랑스어의 사용과 관련된 1975년 12월 31일의 바로리올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즉 프랑스어는 이제부터 물품과 서비스의 명명, 소개, 광고, 보증조건, 노동계약서 작성, 공공기관 등록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프랑스어 해당 용어가 있는데도 외국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982년 10월 20일과 1977년 3월 14일의 두 번에 걸쳐 회람된 후 이 법은 넓은 의미에서 프랑스어 사용자(물품, 재산, 서비스, 공문서, 정보문서 등의 소비자들과 이용자들)이 외래 용어의 남용에 대해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기관 외에도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 반공식 단체와 시민단체가 있다.

5.8. 프랑스어 보호협회(DLF)

1958년에 아카데미의 주도 아래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적 언어학자는 별로 없다. 전통주의적 경향을 띠고서, 과거지향 어휘(특히 리트레, 아카데미, 로베르 대사전 등의 사전들)를 강력 추천한다. 그리고 아카데미의 결정을 지지하고, 매스미디어, 작가, 유명인사들이 범하는 규칙의 위반사항들에 반대하며 투쟁한다. 일반 어휘 내에 전문기술용어가 이입되는 것을 막으며, 올바른 용법의 권위 상실에 항거한다. 잡지 『프랑스어 수호』는 현재 아카데미의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정보원이다.

5.9. 프랑스 전문용어협회(AFNOR)

1926년에 창설된 이 기관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이며, 표준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업기술용어의 프랑스어 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수많은 각종 위원회가 공식적 용어들을 확정한다. 지금까지 3만 개념들이 정의되고, 명명되었다. 용어목록과 카드색인들은 『단어의 열쇠』(1973-79)와 『유럽 전문용어학지』(1980년 이후)에 발표되고 있으며, 1973년부터 전문용어 자동처리 자료은행인 <규범용어> Normaterm가 만들어졌다.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 분명하고 정확한 용어법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게 할 목적이지만 또한 프랑스어 일반어의 체계 내에 전문용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거쳐 프랑스어 규범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프랑스어 규범은 기술자들에게 보급하고, 영어 신조어가 밀려드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다음 위원회를 설립했다.

5.10. 프랑스 전문용어 연구위원회(CETT)

1954년에 설립된 이 위원회는 영어와 기타 언어에서 차용된 전문어휘들을 선별하여, 프랑스어로 변안, 번역하거나 프랑스어로 신조어를 만드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기술 매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더 오래된 기관, 연구소들의 해당 분과들(과학 아카데미, 프랑스 연구소의 과학용어 자문위원회, 각 행정부처 전문용어위원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1971년 이래로 『단어은행』(La Banque des Mots)에 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전문용어 관련 연구학회, 협회들이 많이 있다.

다음의 기구들은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권의 국제기구이다.

5.11. 보편 프랑스어 연맹(FFU)

1963년에 창설된 이 연맹은 프랑스어의 보호와 통일을 위한 초국가적 연합으로 프랑스어를 수호하고, 여러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다. 프랑스어권 내에서 동질적 프랑스어, 보편적 프랑스어를 보존함으로써 여러 프랑스어권의 주변 프랑스어로 변하는 분화를 인위적으로 억지하려고 한다. 이 연맹의 산하에 프랑스어 신문 기자 국제협회, 브뤼셀 언어협회, 캐나다 프랑스어 교사협회 등의 단체가 있다.

5.12. 국제 프랑스어 자문위원회(CILF)

1967년 벨기에의 왕립 아카데미에 의해 구성된 이 기관은 20여 개국의 대표들(대부분 언어학자거나 저명한 모범가들)의 모임이다. 그 임무는 세계 내에서 프랑스어의 통일성을 보장하여 프랑스어권 공동체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내의 다른 언어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어로서의 프랑스어의 면모에도 관심을 갖는다.

첫째 목적을 위해 이 위원회는 프랑스어의 개선을 감시한다. 철자법과 문법의 표준화, 일반어의 정제화와 과학기술용어의 정립, 사회경제적 발전의 도구로서 프랑스어의 완성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에 부응해서 이 기구는 각종 대회를 주관하고, 잡지들을 발간한다. 『단어

은행』, 『언어와 전문용어』와 『현대 프랑스어』. 그리고 사전, 특수어휘집, 언어학 관련 저서들도 발간한다. 이 위원회는 특히 전문용어의 영역에서 이룩한 성과 덕택에 명성이 높고, 국제적 차원에서 프랑스어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외의 프랑스어 방어와 보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있다. 프랑스어 총괄위원회에 보고된 공사적 기관, 단체, 조직들만 해도 150여 개 이상 되며, 이들은 모두 프랑스어의 다양한 모습과 프랑스어가 세계 내에서 갖는 역할을 연구하고 다룬다. 이제 이들의 활동 영역은 프랑스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프랑스어권과 전세계를 상대로 프랑스어의 현상과 역할을 감시한다. 이 수많은 단체는 정부의 여러 부처들로부터 지원들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나, 프랑스어권과 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역할, 아카데미 이후 일관되어 내려온 언어정책을 위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일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60년 이후에는 각종 개인, 기관, 단체의 주도권이 점차 국가의 공식적 기구, 기관, 연구소로 이관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비전문 단체나 조직, 기구들의 활동과 협력으로 모국어인 프랑스어가 성공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6. 맺는말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근간은 프랑스인들의 자기 모국어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에 기초해서 잘 체계화된 언어 규범이며, 언어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자산을 그 순수하고 우아한 형태로 지키려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도들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대에 이루어진 정책과 법제 상에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프랑스어의 규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올바른 용법이 정의된 17세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프랑스어 자체의 변화와 사

회문화적 변동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처방적 규범 외에도 관용적 규범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국제화,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외국과의 과학, 기술, 산업, 상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많아지면서 각 분야의 외래 용어, 특히 영어 용어의 범람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프랑스 언어정책의 많은 노력이 여기에 할애되고 있다. 과거에 라틴 문물이 프랑스어에 이입될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끝으로는 대외적으로 다소 공격적인 방언책으로 단일 유럽과 과거 프랑스어권의 복원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보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프랑스어가 누렸던 지위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어권 통한 언어정책을 통해 프랑스어의 동질성, 일관성, 통일성 기하려고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프랑스 어문연구」 제9집, pp. 1-17.
-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 어문교육」 제11집, pp. 27-51.
- 김현권(1994), 「佛語史」, 서울 : 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현권(1995), 프랑스 언어정책, 「불문학과 학습지」 제2호, pp. 1-12.
- 송기형(1999), 불어 사용법 연구, 「교육 한글」, 제11·12호, pp. 163-194.
- 송기형, 정철현(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27집, pp. 391-411.
- 장소원(1993), 프랑스 언어정책,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 : 태학사, pp. 202-225.
- Lodge, R. A.(1993), French : *from Dialect to Standard*, Routledge, London and N.Y.
- Muller, B.(1985), *Le Français d'Aujourd'hui*, Klincksieck, Paris.

Sanders, C.(ed.)(1993), *French Today :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Wartburg. von W.(1971¹⁰) *E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çaise*,
A. Francke(김현권 역, 「프랑스어 발달사」, 서울 : 한국문화
사 2000)

기타 송기형, 정철현(1999)의 참고문헌에 인용된 인터넷 사이트 참조.